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5. 10. 12.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8월 8일

. 회부일자 : 1995년 8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5. 8.22.)상정,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유보의결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5.10.12.)재상정

- 보충설명 및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 경 주)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는 경우도 도세를 면제
-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창 환)

충청북도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충북지역 도내에 중소기업을 설립코자 하거나 또는 진입유치를 희망하는 외부자본가의 중소기업 입지선정 문제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해 나아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조례에 있어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도세감면 혜택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확대 시행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함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의 조건부 의무이행을 실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규정을 명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 향상차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제119회 임시회 개최 이전에 지방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조례별 감면세액현황 및 지방세감면시 충족에 돌아올 수 있는 반사적이익 또는 혜택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동시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전제로 도원안대로 의결(참석 8인, 찬성 8인)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